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9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1. 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농촌 유학 사업’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지출항목은 집행을 할 수 없게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바, 이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공무원에게 부여된 법령 준수의 성실의무를 어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 포함)에 ‘농촌 유학’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농촌유학’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의결 하였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2월 7일 해당 사업 예산을 교육위 의결과 같이 역시 전액 삭감하였으며,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예결위가 심의한 것과 같이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지출항목을 삭감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 포함)’이 의결되었음
-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지출항목이라면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의회의 심의 완결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고 사업추진이 무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절한 업무집행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충분히 예상된 12월 8일에 ‘23년도 농촌유학생 모집 공고’를 하고, 12월 13일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확정된 12월 20일에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을 받았음.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일련의 행정처리는 지방의회에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과 모든 지출항목은 예산에 편성하고,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령 예비비 등이라도 지출을 할 수 없게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4. 이송처

- 감사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기초로 행하는 모든 행정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나눠 가진 민주적 권한과 역할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사업에 필요한 본예산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이런 행태가 의회의 의결 권한을 훼손하고, 자칫 신청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감사원에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는 2023년 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하며 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의 구조적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1월 29일 교육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의결했고,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2월 7일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자면, 교육청은 최소한 12월 8일 예정되었던 신청자 모집공고는 본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보류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의회의 심의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다음 날인 12월 8일 교육청은 2023년도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삭감된 12월 16일 전후로도, 학부모 설명회(12.13.), 신청서 제출(12.14.~12.20.), 사전방문(12.26.~' 23.1.4.), 최종 배정(' 23.1.11.)에 이어, 추가모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업무집행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균형과 견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기능의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유학’ 사업의 강행과정에서 교육청 내 업무처리의 적절성 여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의회 심의 결과가 무시되는 과정에서 예산

과 사업부서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내 전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등 사업 홍보와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민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또한 예산 삭감의결 이후에도 학부모들에게 사업 및 지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한 달가량 미루며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은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추진한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의무(법령준수)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에서 위법과 부적절한 사항을 가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교육청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